

심 사 보 고 서

-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



충 청 북 도 의 회
행 정 문 화 위 원 회

심사보고서

충북문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92
----------	-----

2016. 6. 23.(목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6년 5월 31일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6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6월 14일

- 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)

가. 제안사유

○ 「충북문화관 운영·관리 조례」 및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탁조례」에 의거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위·수탁 협약종료(2016.9.5.)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 재협약을 위하여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① 위탁 대상 : 충북문화관 운영관리

② 추진계획

○ 수탁기간 : 2016. 9. 6 ~ 2018. 9. 5(2년간)

※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(충북문화관 운영·관리 조례)

- 수탁기관 : 문화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
 ※ 現 수탁기관 (재)충북문화재단 / 2012.9.6.~2016.9.5.(4년간)
- 수탁방법 : 공모선정
- 위탁사무 : 충북문화관 운영관리
 - 문화관 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
 -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 및 자료 제공
 -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
 - 지역향토문화예술 소개 및 보급
 -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, 시설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
 -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일정
 -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획 수립 : '16. 6월
 -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공고 : '16. 7월
 -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: '16. 7월
 -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심의·선정 : '16. 8월
 - 위수탁 협약 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: '16. 8월

3. 검토보고 요지

- 이번 동의안은 도민의 문화예술 창작공간 생활예술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충북문화관의 위·수탁 협약 종료(2016.9.5.)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도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.
- 충북문화관은 1939년 도지사 관사로 건립되어 사용하다가 2012년에 충북문화관으로 변경하여 운영 중임. 지역 예술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연, 전시를 할 수 있고 도민들의 접근성이 좋아 이용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.
- 충북문화관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에게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북문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」

의안번호	제 392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

충북문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6년 5월 31일

충북문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9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6년 5월 3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「충북문화관 운영·관리 조례」 및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탁조례」에 의거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위·수탁 협약종료(2016.9.5.)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 재협약을 위하여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 대상 : 충북문화관 운영관리

나. 추진계획

- 수탁기간 : 2016. 9. 6 ~ 2018. 9. 5(2년간)
 - ※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(충북문화관 운영·관리 조례)
- 수탁기관 : 문화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
 - ※ 現 수탁기관 (재)충북문화재단 / 2012.9.6.~2016.9.5.(4년간)
- 수탁방법 : 공모선정
- 위탁사무 : 충북문화관 운영관리
 - 문화관 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
 -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 및 자료 제공
 -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
 - 지역향토문화예술 소개 및 보급
 -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, 시설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
 -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일정
 -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획 수립 : '16. 6월
 -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공고 : '16. 7월
 -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: '16. 7월
 -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심의·선정 : '16. 8월
 - 위수탁 협약 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: '16. 8월

3. 참고사항

-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및 관계 법령



충북문화관 운영관리 민간 위탁 추진 계획(안)

충북문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(안)

도민의 문화예술 창작공간 생활예술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충북문화관의 위·수탁 협약 종료(2016.9.5.)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재협약을 추진하는 계획임.

1 관련 근거

- 충북문화관 운영·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
 -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설의 위탁 운영
-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제4조
 - 위탁대상 사무 및 도의회 동의 규정
-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부칙 제2조(경과조치)
 - 기 민간위탁사무도 위탁기간 만료시점에 도의회 동의 조치

2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위·수탁 현황

- 수탁기간 : 2012. 9. 6 ~ 2016. 9. 5(4년간)
 - ※ 최초 '12.9.6~'14.9.5(2년), 연장 '14.9.6~'16.9.5(2년)
- 수탁기관 : (재)충북문화재단
- 위탁시설 : 부지 9,512㎡, 건물 756㎡
 - 문화의 집(407㎡) : 문학 상시전시, 북카페
 - 숲속갤러리(325㎡) : 회화갤러리, 기획전시실, 사무실
 - 경비실(24㎡) : 시설관리를 위한 관리인력 근무
 - 야외정원 : 소규모 공영장, 휴게쉼터, 주차장 등
- 운 영 비 : 271,100천원('16년)

○ 위탁사무 : 충북문화관 운영관리

- 문화관 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
-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 및 자료 제공
-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
- 지역향토문화예술 소개 및 보급,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
- 시설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,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3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위탁 추진 일정

① 충북문화관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: '16. 6월

② 충북문화관 민간위탁 계획 수립 : '16. 6월

○ 위탁방법, 위탁기간, 수탁기관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등

③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추진 : '16. 6월

○ 구성인원 : 7명(관계 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)

· 당 연 직 : 3명(기획관리실장, 행정국장, 문화체육관광국장)

· 위 축 직 : 4명(관련분야 외부전문가)

④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공고 : '16. 7월

⑤ 수탁기관 심의·선정 : '16. 8월

○ 심의사항 : 수탁자의 적격성, 사업수행능력, 재정운영 등 평가

○ 운영방식 : 현장(필요시) 및 서면평가 후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

⑥ 위·수탁 협약 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: '16. 8월

관련법령 발췌

■ 충북문화관 운영·관리 조례 14조

제14조(위탁) ① 문화관을 운영·관리함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및 전부에 대하여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위탁 및 수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르며,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개정 2015. 3. 27>

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,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<개정 2012. 10. 10>

■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부칙 제2조(경과조치)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, 위탁기간 만료시점에 이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■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, 제6조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3. 27>

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,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3. 27>

③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탁기관선정심의회) ①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의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 위촉시에는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3. 27>

③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.<개정 2015. 3. 27>

④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은 충청북도(이하도)라 한다)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,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 수의 1/2을 초과할 수 없다.<개정 2015. 3. 27>

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현장확인 등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2015. 3. 27>

⑥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 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15. 3. 27>